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5-3호
2025. 1. 10.(금)

차 례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5-3호) 1
- 비래동137-4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고시 제2025-4호) 2

공 고(12)

-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문(6차)(공고 제2025-20호) 4
-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5-26호) 13
- 202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25-33호) 16
- 2025년도 제1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공고(공고 제2025-34호) 17
- 2025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공고 제2025-35호) 22
- 2025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공표(공고 제2025-36호) 24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5-37호) 25
- 도시계획시설(소로2-송촌55호선 외 1개 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열람 공고(공고 제2025-41호) 27
-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_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공고 제2025-42호) 29
- 2024년도 4분기 임대조건 신고 현황 공고문(공고 제2025-44호) 32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5-51호) 38
-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공고 제2025-56호) 48

차 례

입법예고(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48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49호) 57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0호) 7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52호) 8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보 게재 의뢰(공고 제2025-54호) 9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제2025-59호) 1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공고 제2025-63호) 10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64호) 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66호) 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67호) 1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68호) 135

공 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5-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615	416539.26	237362.19	416539.39	237362.55	세계좌표(재설)
		316232.15	237290.43	316232.24	237290.77	지역좌표(재설)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87-1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5년 1월 7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비 고		-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5-4호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명칭: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대전 대덕구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나. 면 적: 7,470.8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 착수 예정일: 2027년 상반기 예정

나. 사업 준공 예정일: 2029년 하반기 예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 명칭: 비래동 137-4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조합사무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39, (비래동 130-18번지, 2층)

5. 조합설립인가일

가. 일 시: 2025. 1. 2.

6. 사업시행구역(붙임 참조)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찬우	전화번호	042-608-5373
------	-------	-----	-----	------	--------------

끝.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6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원 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공공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3. 지원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4.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비율 · 한도 등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금액	비고
계		40,000천원	
내진성능평가비	100%	3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인증수수료	100%	1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 지원 한도금액 산출 근거】

-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기준금액 30,000천원×지원비율 1.0 = **30,000천원**
-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기준금액 10,000천원×지원비율 1.0 = **10,000천원**

5.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기간, 제출 장소 등

- 제출 기간: 2025. 1. 10. ~ 2025. 1. 24. (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 제출 방법: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 서류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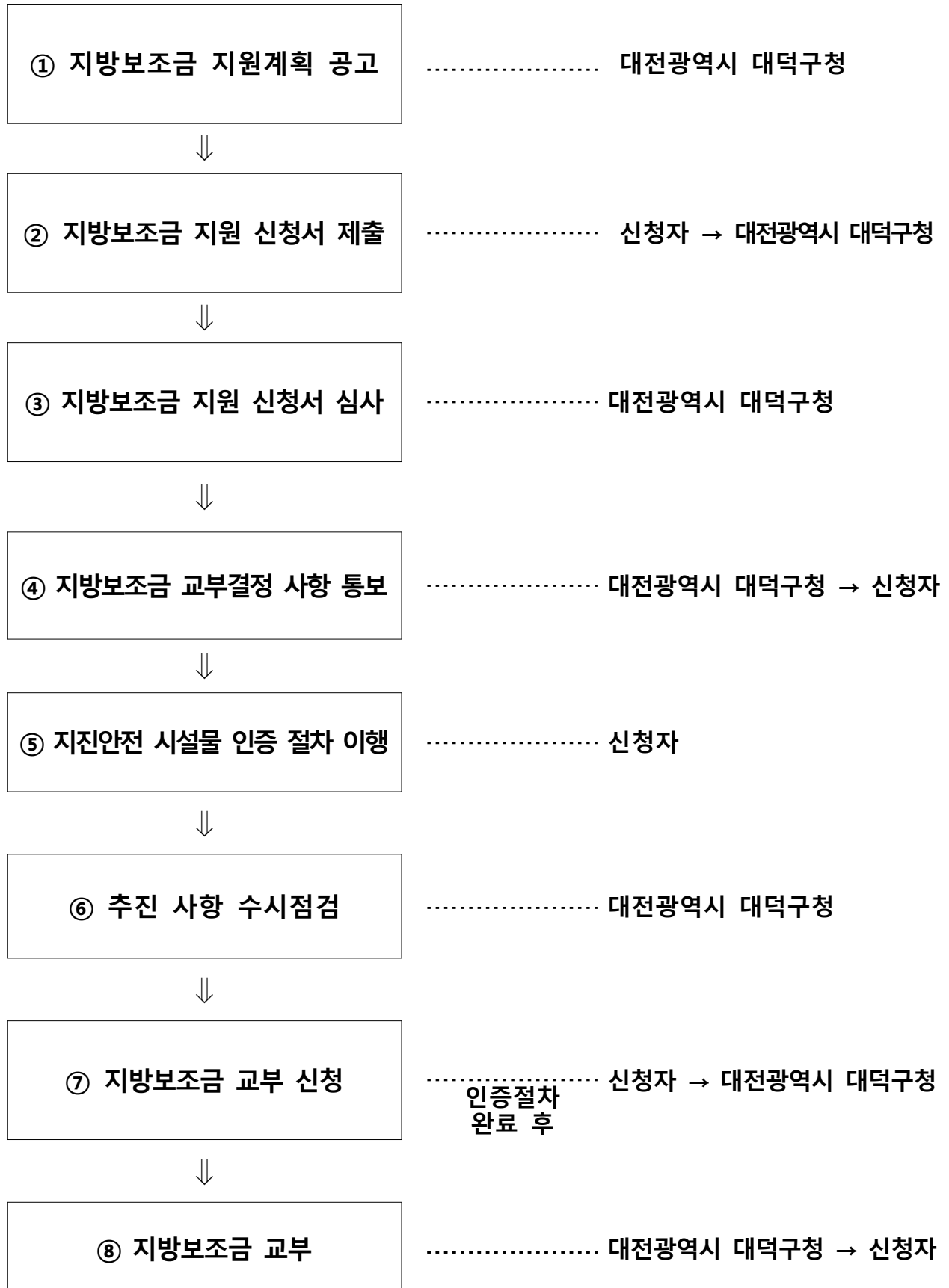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지원 기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5. 12. 31.

7.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총 지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를 받은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완료 한 후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자부담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8.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시 유의 사항

- 1)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밀안전진단 시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여야만 인증신청이 가능

- 3)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로 하며,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042-608-5353) 문의.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

구 분	내 용	
건축물 명칭		
소재지	(새주소)	
소유자 등	성 명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
	주 소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 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내진설계 적용여부* : 해당란에 “○”를 표기

2. 추진계획

가. 소요 기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5년 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

나.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용역 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평가결과* (O, X)	
				성능확 보	미확보
용역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예정	년 월 ~ 년 월	※예정금액 기재	※기재생략 가능		

☞ (확인사항)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21.6.10.)에 따라, 인증 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를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수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

추진계획	인증수수료*(천원)
2025년 월 ~ 2025년 월	※ 납부 예정금액 기재

☞ 인증수수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

3.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계			
내진성능 평가비			
인증수수료			

☞ 작성요령

1) 내진성능 평가비

①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없음

②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지원한도 금액 30,000천원 / 자부담: 지원한도 금액 초과분

2) 인증수수료

①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없음

②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지원한도금액 10,000천원 / 자부담: 지원한도 초과분

별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7.(17일간)
3. 공고대상 / 25명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정*덕	88다64**	충북 옥천군 청산면 법화3길 8*-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7,200,000	폐문부재
황*연	74로44**	세종특별자치시 보듬4로 55, 160*동 160*호(도담동, 도람마을16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GO**AS BUR*K	05구24**	대전시 대덕구 덕암북로48번길 2*-11, 지혜빌라 *06호(덕암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500,000	폐문부재
배*관	22마80**	대전시 대덕구 중리로43번길 *-9, 10*호(중리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주)씨케*환경	84오15**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97,*07호(도안동, 목원캐릭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900,000	폐문부재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손*애	94라8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600,000	폐문 부재
(주)태*	92두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 2층(읍내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800,000	이사 불명
이*윤	57도59**	대전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안길 *6(읍내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300,000	폐문 부재
허*도	82모54**	대전시 동구 계족로512번길 *3, *01호(용전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정*산업	80마24**	대전시 동구 대전로 45*-3, 1층 *02호(가오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400,000	폐문 부재
주식회사 동*개발	21루46**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87번길 3*-25, 20*호(복수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	수취인 불명
김*화	05도3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2길 *, 가동 *01호(한양빌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	폐문 부재
김*중	87구6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족로 2*, *07동 20*호(송강동, 송강그린아파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 불명
(주)우*냉*산업	88다75**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4*5번길 *1(가장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한*산업(주)	93무6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300,000	이사 불명
이*천	95우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 *07동 1*01호(법동, 그린타운아파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이*권	84더69**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이사 불명
(유)연*수도	94러22**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2*, 10*호(한솔동, 세종프라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이사 불명
홍*오	65누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9, *02동 10*호(송강동, 송강마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맛*물류(주)	31서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3길 4*-6, *02호10*호(구로동, 초롱타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 불명
봉*정	85보85**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300,000	수취인 불명
전*섭	85마85**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길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이*옥	02마29**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5* (오류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 불명
김*우	39머83**	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4 로 1*, 10*동 *03호(서산테 크노밸리 예다음아파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김*희	93너38**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남 산길 5*-42, *동 10*호(세한 원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 부재

4. 공시송달내용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끝.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4. 12. 31. / 단위: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 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49,071	148,893	178	9,939

※ 청구 서명인 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5 이상

※ 주민등록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34호

2025년도 제1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2025년도 제1회 대덕구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대 상)

-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m미만 도로 / 토지이용 도시계획(도로 폭 등) 확인
-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의 보도부

나. (제출기한) 2025. 1. 10.(금) ~ 1. 24.(금)까지

다. (제출방법)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go.kr>) 관련 문의: 市 건설도로과(☎ 042-270-5913)

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5년 2월 중(예정)

마.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 각 1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구간 중복여부 사전협의

- 도시철도건설국 트램건설과(☎ 042-270-0473), 트램시스템과(☎ 042-270-0972)

바. (주의 사항)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必(임의 작성 및 확장자 변경 금지)
- 시·종점 상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표기, 현황 사진에 굴착 예정구간 표시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 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만 유효하며, 당해 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심의받아야 함
-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1. 도로굴착조정신청 조사서

① 연 번							② 굴착 목적					
③ 굴착시행자							④ 굴착 위치					
⑤ 굴착개요	구분	계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 투수콘	보도 블럭	소형 고압	기타	⑥ 굴착기간		신청	
	연장(m)										조정	
	굴착폭(m)											
	면적(m ²)											
⑦ 관리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⑧ 위치도, 사진	【 위치도 】						【 현황 사진 】					

※ 굴착구간 전경사진 첨부

2. 굴착단면도

연번		굴착구간	
1. 지하매설물 현황도 ※ 굴착지역에 대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기한 도로횡단면도임 (100M간격으로 작성)			
2. 굴착계획도(도로횡단면도)			
3. 관로굴착복구단면도			
4. 유관기관 확인 (주요지하매설물에 한함)	기관명	담당자	의견
	상수도사업본부	(인)	
	CNCITY에너지	(인)	
	한국전력공사	(인)	
	한국송유관공사	(인)	
	한국가스공사	(인)	
	KT	(인)	
	구청 건설과	(인)	
		(인)	

3. 각종 안전관리대책

연번		굴착구간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복구방법		
5.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7.	검토자 의견		

- ※ 1. 지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
- 2. 7번의 사항은 심의기관에서 작성. 끝.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4. 12. 31. / 단위: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1/3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계	147,597	22,140		
오 정 동	12,505		1,476(총수의 1%)	4개동 이상 (1/3이상의 동)에서 동별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22,140 명 이상 을 받아야 함
대 화 동	5,267		791(총수의 15%)	
회 덕 동	11,301		1,476(총수의 1%)	
비 래 동	13,223		1,476(총수의 1%)	
송 촌 동	21,357		1,476(총수의 1%)	
중 리 동	16,447		1,476(총수의 1%)	
법 1 동	10,710		1,476(총수의 1%)	
법 2 동	13,053		1,476(총수의 1%)	
신 탄 진 동	14,103		1,476(총수의 1%)	
석 봉 동	12,917		1,476(총수의 1%)	
덕 압 동	11,440		1,476(총수의 1%)	
목 상 동	5,274		792(총수의 15%)	

▣ 대덕구의회의 의원

(기준일: 2024. 12. 31. / 단위: 명)

선거구별	선거구역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	1/3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비 고
가선거구	계	41,535	8,307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동별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8,307명 이상을 받아야 함
	오 정 동	12,505		416(총수의 1%)	
	대 화 동	5,267		416(총수의 1%)	
	법 1 동	10,710		416(총수의 1%)	
	법 2 동	13,053		416(총수의 1%)	
나선거구	계	55,035	11,007		2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동별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11,007명 이상을 받아야 함
	회 덕 동	11,301		551(총수의 1%)	
	신탄진동	14,103		551(총수의 1%)	
	석 봉 동	12,917		551(총수의 1%)	
	덕 암 동	11,440		551(총수의 1%)	
	목 상 동	5,274		551(총수의 1%)	
다선거구	계	51,027	10,206		1개동 이상(1/3이상의 동)에서 동별 최소서명인 수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 총 서명인 수가 10,206명 이상을 받아야 함
	비 래 동	13,223		511(총수의 1%)	
	송 촌 동	21,357		511(총수의 1%)	
	중 리 동	16,447		511(총수의 1%)	

※ 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구청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수를 합한 수

- 주민등록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 국 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관련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일: 2024. 12. 31. /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총수			청구 서명인 수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149,060	148,893	167	2,130

※ 청구 서명인 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C) 1/70 이상

※ 주민등록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3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5. 1. 10. ~ 2025. 1. 31.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 (☎042-608-683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 기간이 도래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3). 끝.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가 사유	구분
서*원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03, 10*동 20**호(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부과 고지서
윤*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로94번길 27-*, *동 *04호(용계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부과 고지서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도시계획시설(소로2-송촌55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열람 공고

1. 계룡산업(주) 대표 정하석으로부터 대덕구 송촌동 515번지 일원 용전 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소로2-송촌55호선 외 1개노선) 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송촌55호선, 소로1-송촌14호선)
- 명칭:도시계획시설(소로2-송촌55호선, 소로1-송촌14호선) 확장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소로2-송촌55호선: 도로 확장공사(B=9.5m, L=119.0m, 면적=1,177.7㎡)
- 소로1-송촌14호선: 도로 확장공사(B=0~2.5m, L=2.7m, 면적=3.3㎡)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계룡산업(주) 대표 정하석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402호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05.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붙임 참조
-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아. 열람장소: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102)
- 자.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 작성 제출
- 차.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251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5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덕암천 (덕암천) 정비사업	소하천	평촌동 200-4	상서동 178-5				24.12	25.11	제방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소하천(덕암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소하천인 덕암천에 대하여 노후 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 개 요: 하천정비 L = 600m
 - 위 치: 대덕구 평촌동 200-4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 공 일: 2024. 12. 5.
 - 준 공 일: 2025. 11. 29.
- 실시설계도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건설국 건설과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

구 분	재 원 별(백만원)					비 고
	연도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24년도	605	-	100	505	-	

□ 위치도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44호

2024년도 4분기 임대조건 신고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른 2024년도 4분기 임대조건 신고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현황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2. 10. (31일간)
3. 공고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4. 2024년도 4분기 임대조건 신고 현황

연번	임대주택 주소	주택 유형	주택 종류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96번길 82 1동 201호실 (신탄진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217	20251216	2,000,000	367,000
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114번길 11 205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01	20250930	1,000,000	200,000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114번길 11 203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01	20250930	1,500,000	250,000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17번길 77 306호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23	20251222	15,000,000	350,000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303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17	20260916	90,000,000	0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401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723	20260722	20,000,000	400,000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204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825	20240824	5,000,000	500,00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302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27	20250826	5,000,000	600,00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301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29	20250829	5,000,000	440,000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304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713	20250712	5,000,000	450,000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202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721	20260720	110,000,000	0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402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115	20261114	90,000,000	0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403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723	20250723	5,000,000	600,000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203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20	20261220	100,000,000	0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201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15	20251214	5,000,000	450,000

연번	임대주택 주소	주택 유형	주택 종류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4번길 50 404실 (중리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03	20250802	5,000,000	500,000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3번길 10 102실 (송촌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101	20261030	80,000,000	94,00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길 77 201실 (오정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203	20261202	20,000,000	450,00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16동 306호 (연축동, 주공아파트)	아파트	준공공임대	20241130	20261129	3,000,000	210,000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79번길 28 2층실 (송촌동)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20240926	20260925	10,000,000	500,000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22번길 145 2동 302호 (덕암동 심보빌라)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04	20261203	5,000,000	250,000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96번길 82 1동 401호실 (신탄진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210	20261209	10,000,000	500,000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7 402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15	20261015	4,000,000	230,000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401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720	20260719	15,000,000	450,000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305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719	20250718	100,000,000	0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304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1016	20251015	60,000,000	230,000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303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623	20250622	90,000,000	150,000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302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801	20250731	100,000,000	50,000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301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25	20260924	5,000,000	500,000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502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22	20250921	5,000,000	570,000

연번	임대주택 주소	주택 유형	주택 종류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501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1225	20251224	20,000,000	350,000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405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519	20250518	20,000,000	520,000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404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717	20250816	20,000,000	390,000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403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10	20260909	5,000,000	450,000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9 402실 (송촌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30829	20250828	95,000,000	0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31번길 22 416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0923	20260922	60,000,000	0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75-16 301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01	20261130	5,000,000	367,500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75-16 101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21	20261220	5,000,000	315,000
39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123 308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30	20251030	3,000,000	300,000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123 304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01	20261130	3,000,000	346,500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123 204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08	20261207	4,000,000	257,000
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46 203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216	20251216	1,000,000	250,000
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10동 202호 (연축동 주공아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224	20261223	22,000,000	0
4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17번길 77 206호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119	20251118	5,000,000	400,000
4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17번길 77 302호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116	20261115	125,000,000	0

연번	임대주택 주소	주택 유형	주택 종류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4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1 302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20	20261019	10,000,000	420,000
4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1 201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21	20261020	10,000,000	420,000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1 202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21	20261101	10,000,000	420,000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46 104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30	20261030	10,000,000	100,000
5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8동 410호 (법동 주공0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102	20261101	2,000,000	260,000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61 B102실 (목상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30	20251029	2,000,000	230,000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3동 1309호 (법동 주공0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06	20261005	68,000,000	0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08번길 35-12 102실 (목상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14	20251013	3,000,000	390,000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08번길 35-12 104실 (목상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10	20250109	2,000,000	290,000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 303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1001	20250930	1,000,000	300,000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3번길 10 301실 (송촌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24	20251024	2,000,000	294,000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559-31, 201호	다가구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20240715	20250714	10,000,000	450,000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8번길 61 103실 (목상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01	20250930	2,000,000	334,500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산초교로 66 101실 (오정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10	20250809	3,000,000	300,000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 503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30	20250829	1,000,000	200,000

연번	임대주택 주소	주택 유형	주택 종류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6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 42 501호 (대화동)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831	20250830	1,000,000	250,000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 105동 1407호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115	20251114	5,000,000	348,000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14번길 33-7 102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1001	20250228	1,000,000	250,000
6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22번길 55 302호 (덕암동 정궁빌라)	다세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20240709	20260708	0	550,000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994번길 53-22 B01호 (오정동 홍성빌라)	다세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0802	20250801	22,000,000	0
6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67번길 29-6실 (오정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0824	20250823	3,000,000	300,000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46 105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24	20260923	10,000,000	350,000
6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21번길 46 102실 (중리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20240904	20260903	70,000,000	0
6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0 일원 e편한세상 105동 1103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20240925	20260924	10,000,000	300,000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5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5. 1. 10. ~ 1. 31. (21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5. 1.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끝.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최*서	111오4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8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김*수	162두4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전*순	35루9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송*용	19부5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62번길 21,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함*문	35주8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6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노*학	61우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9,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기타
김*정	278서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2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최*용	07노86**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42,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장*기	55구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조*성	38구1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세거리로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김*기	59모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김*현	60구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정*희	52라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4번길 1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양*연	11라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우*문	57머6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6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복*하	805머43**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번길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기타
최*희	196머8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6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고*근	58너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박*수	14서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이*노	37누8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2번길 55, *층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오*애	64거6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기타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강*숙	153러68**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이*재	386고4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덕골길 **_**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유*현	86러89**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지오*길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기타
주식회사 *****	106거49**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91,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유*수	297고30**	인천광역시 서구 옷우물로34번길 4,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 주식회사	156구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0, *층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서*진	46모2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13-1, ***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수취인불명
김*기	69소4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4번길 33-14,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문*봉	26우8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정	278서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2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정*근	18소15**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길 45, ***동 ***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기타

김*태	80무23**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11번길 139,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이사불명
박*길	167모56**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동 ***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양*성	41머5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129번길 72,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기타
윤*근	01어17**	대전광역시 서구 도학*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유*자	177다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주소불명
소*수	18어5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최*준	09머07**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말3길 4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김*동	248소24**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16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이*화	36서4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기타
유*영	25오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기타
차*영	24무7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김*두	39서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김*호	48다37**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박*순	18보37**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로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주식회사	66도0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55,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이사불명

김*조	333머9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정*미	20조7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기타
심*선	81부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7번길 6-15,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이*아	대전60바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기타
조*희	204마5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2,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정*춘	280다4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1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이사불명
강*호	51고7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이*백	158도32**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61번길 7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이*현	19로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3,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기타
조*희	82러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문*준	269수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66-1,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수취인불명
고*배	107무8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김*식	67우5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용산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강*원	365버6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수취인불명
김*묵	211더9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서*진	46모2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13-1,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	11더2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39-2, *층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수취인불명
안*욱	45구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27번길 12,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문*수	64주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이*이	128구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함*문	35주8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6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정*춘	280다4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1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이사불명
현*환	29무1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박*민	12저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고*배	107무8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박*용	45가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최*석	27모5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5번길 44, ***동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김*숙	02두92**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23번길 42, ***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기타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교육일시 및 장소

가. 신규교육

- 1)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규 옥외광고사업 등록 희망업체(대표자)
- 2) 교육일정:

구 분	01월	02월	03월	04월	0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자	1/15	2/19	3/19	4/16	6/18	8/20	9/17	10/15	11/19	12/17

- 일 시: 월별 셋째 주 수요일, 09:00 ~ 16:00(5~7월은 보수교육으로 대체)
- 장 소: 대전옥외광고협회 회의실

※ 교육최소인원: 5명 (교육인원 저조시 사이버교육 대체)

- 3) 교육내용: 법규교육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실무이론(6시간)

나. 보수교육

- 1)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대표자)

- 2) 교육일시: 2025. 5. 22.(목). 09:00~12:00

※ 교육 장소와 날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교육장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190(하기동)]

- 4) 교육내용: 법규교육 등(3시간)

2. 교육주관: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교육 위탁업체)

3. 수강절차: 교육당일 09:00까지 등록 후 수강

4. 수강비용: 30,000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교육수강자에게 부담

5. 문 의 처: 대덕구 건축과(T.042-608-5183),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T.042-254-2393)

※ 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13조).

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전화 : 042-608-5476, FAX : 042-608-3851, E-mail : 0302dudaos@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 박영욱(전화 : 042-608-54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2년 이내”를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내의 범위에서”를 “단위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를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를 “추가수당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인사 운영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가 표기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을 정비함(안 별표 5의3).
- 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 1.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
(전화: 042-608-6523, FAX: 042-608-3821, E-mail: mja2360@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전화 : 042-608-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2, 별표 5의3, 별지 제3호, 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 계		연구관·연구사
직	직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		연구관 · 연구사
직	직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경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		연구관 · 연구사
직	직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 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 제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①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u></p>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리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 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

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별표)에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 (당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신탄진동)
 -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신탄진동)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42-608-6513, FAX : 042-608-3822, E-mail : sek09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 담당자 신은경(전화 :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 92 (오정동)
3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10 (대화동)
4	회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읍내동)
5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10 (비래동)
6	송촌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
7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47 (중리동)
8	법1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법동)
9	법2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신탄진동)
11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동)
12	덕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60 (덕암동)
13	목상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7 (목상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회의는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함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9조, 제12조).

나. 위원회 회의는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함으로 정비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전화: 042-608-5472, FAX: 042-608-3851, E-mail: gpgp2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희정(전화: 042-608-5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을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하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u><신 설></u></p> <p>④ (생략)</p> <p>제9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1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u></p> <p>② (생략)</p> <p>제12조(위원의 해촉)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u> 2. <u>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장기 불참,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u><삭 제></u></p> <p>제11조(위원회 회의) ① ----- ---- <u>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며,</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 관련 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 구 출생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생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 5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

메일 :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출생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생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출생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의3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3(출생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u>2.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생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u> <u>3.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u>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2023. 12. 29.>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목개정 2010. 12. 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3. 3.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2023. 12. 29.>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2023. 12. 29.>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2023. 12. 29.>

[전문개정 2010. 12. 30.]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 (당초) 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0년 6월 30일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54, FAX : 042-608-3811, E-mail : jangdarae@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장다래(전화 : 042-608-60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3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5년 6월 30일</u> 까지로 하며, 원리금 상환 후 각 개별기 금에 귀속시킨다.	제14조(존속기한) ----- ----- <u>2030년 6월 30일</u>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
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46, FAX : 042-608-3811, E-mail : chlt194@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최다
운(전화 : 042-608-60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체육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에 신규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
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42-608-6272, FAX : 042-608-3823, E-mail : kkoda@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전화 :
042-608-6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구 분	위 치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중리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2층 (중리동)
석봉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3층 (석봉동)
오정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6번길 47-10, 3층 (오정동)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X-게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하스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 어린이 스포츠센터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야구장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50,000	75,000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37,500	62,5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 체육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체육경기 외	1회 (1일, 2시간)	75,000	125,000		
		1회 (1일, 4시간)	125,000	187,500		
축구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2시간	3,000	5,000		
대 덕 민 육 체 육 센 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00,000	300,000	○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300,000	450,000	
	다 목 적 실	1회 (1일, 4시간)	40,000	60,000		
풋살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1시간	12,500	25,000	○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 청 수 상 레 포 츠 센 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000,000	1,000,000	○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외	1회 (1일, 8시간)	1,300,000	1,800,000		
덕 암 야 구 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월 회원권		50,000		
	헬스장	1회 이용		2,5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500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4,000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주말 (1면, 1시간)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6,300	5,000	3,800	○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	17,0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 수 상 레포츠센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기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광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 육 외 행 사		1회	40,000	20,000	
녹 화 또 는 행 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 기 또 는 행 사촬 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의 운영종료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여 대덕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서관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의 운영종료에 따라 신탄진도서관 명칭을 삭제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25(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안산도서관)

(전화 : 042-608-5524, FAX : 042-608-3862, E-mail : jeon569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전미양(전화 : 042-608-5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및 석봉도서관”을
“석봉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덕구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	소재지
석봉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2층 (석봉동)
안산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범동)
송촌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9 (송촌동)

[별표 2]

도서관 사용료 (제7조 관련)

1. 부대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평일	토·일요일	
시청각실 (안산도서관)	1 회 (4시간)	30,000원	36,000원	
다목적실 (송촌도서관)		30,000원	36,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2. 부속설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0,000원	*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조 명 시 설	1 회	10,000원		
무 선 마 이 크	1 개	5,000원		
피 아 노	1 회	10,000원		
냉·난방 시설	안산·송촌도서관	1 회 (4시간)	40,000원	*초과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기 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아 취 설 치		1 건	10,000원	*1일 기준
복 사	A4	1 면	40원	*자동판매키형 복합사무기기는 50원으로 한다.
	B4	1 면	50원	
	A3	1 면	60원	
프린터	A4	1 면(흑백)	50원	
		1 면(컬러)	300원	
팩 스	A4	1 회 (3면)	500원	*추가 1면당 100원
스캐너	A4	1 면	50원	*고화질 1면당 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원의 하부조직인 <u>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및 석봉도서관</u> 에 적용하며,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적용 범위) ----- ----- ----- ----- <u>석봉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u>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의 운영종료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여 대덕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서관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신탄진도서관의 운영종료에 따라 신탄진도서관 명칭을 삭제

함(안 제3조 및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
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25(법
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안산도서관)

(전화 : 042-608-5524, FAX : 042-608-3862, E-mail : jeon569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전
미양(전화 : 042-608-5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봉도서관은 매주 일요일, 안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송촌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신탄진도서관 및 송촌도서관</u> <u>은 매주 금요일, 안산도서관은</u> <u>매주 월요일, 석봉도서관은 매</u> <u>주 일요일</u></p> <p>② (생 략)</p>	<p>제3조(휴관) ①-----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석봉도서관은 매주 일요일,</u> <u>안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송</u> <u>촌도서관은 매주 금요일</u></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자료실	석봉도서관	09:00 ~ 18:00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전화 : 042-608-5352, FAX : 042-608-3849, E-mail : joohey4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담당자 (전화 : 042-608-5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

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 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

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5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f00;">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OO구청, OO과 T. 042-000-0000) OO 구청장</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